

#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17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산악문화체험센터는 산악인의 도전 정신을 계승·발전시키고 시민들의 안전교육 및 산악체험 활동 등을 통하여 체력향상과 건강증진 도모,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임
- 나. 2020년 5월 준공에 앞서 향후 산악인들의 거점시설로 활용하고 자립경영을 위해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·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시설개요

- 시설명 : 산악문화체험센터
- 소재지 :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-231('20.5월 준공예정)
- 규모 : 부지 3,000 $m^2$ , 연면적 2,330.46 $m^2$ (지상2층, 지하1층)
- 주요시설 : 상설·기획 전시실, 시청각실, 고산체험실, 다목적실, 안내데스크, 클라이밍 암벽장 등

### 나.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위탁일로부터 3년('20.6월 ~ '23.5월)
- 위탁유형 : 수익창출형
- 위탁방법 : 신규위탁(공모)

- 수탁업체 : 산악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시 정책에 부합한 사업계획 및 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탁업체 선정
- 위탁업무
  - 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·관리
  - 전시계획에 따른 콘텐츠 개발 및 전시
  - 체험·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수익창출을 통한 운영비 확보
  - 홍보 및 마케팅 등 센터 활성화를 위한 업무
  - 주변시설 및 환경과 연계된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 등 관광 활성화
  - 사용료 및 입주시설 관리비 징수 등 재무회계 및 행정업무

#### 다. 추진근거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자격 및 기간)
-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및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- 행정1부시장 방침 제155호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 변경계획('19.6.13.)
-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'적정'('19.9.19.)

#### 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단순히 건물관리 뿐만 아니라 산악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추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하우를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
- 준공(예정)일은 '20. 5월이나 차질 없는 관리·운영을 위해 준공이전에 수탁자를 조기 선정하여 각종 시설 및 향후 운영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

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○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

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..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.....

3. 문화·체육·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.....

9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원가계산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 
용역결과에 따라 운영초기(1~2년) 일부 운영비 지원 가능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체육정책과 체육복지팀 손경이 (☎ 2133-2698)